

경 영 (수 시) 공 시

본 수협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,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◀ 아 래 ▶

1. 공시사유 :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5조 제2호에 의한 조합감사 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(상호 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제3항 제5호)

2. 공시대상

○고 객 명 : 김○○

○금 액 : 8,572천원

○사 유 : 신용대출 부실로 인한 2018년도 중앙회 정기감시 시 문책(변상포함) 사항

○수지에 미치는 영향 : 총 대출금중 관련 직원 현○○ 변상금액 4,286천원을 제외한 4,286천원에 대한 손실예상

○향 후 대 책 : 손실예상액(잔존채권) 대손상각 처리 후 사후관리토록 함.

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장



경 영 (수 시) 공 시

본 수협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,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◀ 아 래 ▶

1. 공시사유 :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5조 제2호에 의한 조합감사 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(상호 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제3항 제5호)

2. 공시대상

○고 객 명 : 현○○, 강○○, 오○○, 김○○

○금 액 : 5,664천원

○사 유 : 퇴직직원 변상금 회수업무 부적정으로 인한 2018년도 중앙회 정기감사 시 문책(변상포함) 사항

○주 요 내 용 : 관련 직원 정○○ 490천원, 강○○ 529천원 강○○ 680천원 변상 처분함

○수지에 미치는 영향 : 총 금액 중 관련자 변상금액 1,699천원을 제외한 3,965천원에 대한 손실예상

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장

